

대구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나31368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손충환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변론 종결 2021. 3. 10

판결선 고 2021. 3. 24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가단38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4. 접수 제30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판사 허이훈판사 김민지

별지